

2019. 2. 1

자동차공제약관

공제규정포함

KOREA TAXI MUTUAL AID ASSOCIATION

KOTMA
전국택시공제조합

— www.kotma.co.kr —

자동차공제 보통약관 목차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공제의 구성

제1조 용어의 정의

제2조 자동차공제의 구성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공제 I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제4조 조합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절 대인공제 II 와 대물공제

제6조 보상하는 손해

제7조 조합원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률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조합원 개별적용

제10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제11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차량공제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제13조 조합원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5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

제16조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17조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제18조 제출 서류

제19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0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제21조 청구절차 및 유의 사항

제22조 제출 서류

제23조 가지급금의 지급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24조 공제금의 분담

제25조 조합의 대위

제26조 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제27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28조 공탁금의 대출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29조 공제계약의 성립

제30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1조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제32조 청약 철회

제33조 공제기간

제34조 사고발생지역

제2장 조합원 등의 의무

제3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3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제37조 사고발생 시 의무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38조 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제39조 공제계약자등록의 양도

제40조 공제계약자등록의 교체

제41조 공제계약의 취소

제42조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제43조 조합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제44조 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45조 분담금의 환급 등

제4장 그 밖의 사항

제46조 약관의 해석

제47조 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제48조 공제계약자등차 등에 대한 조사

제49조 보험사기 행위 금지

제50조 분쟁의 조정

제51조 관할법원

제52조 분담금의 분할 납입

제53조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제54조 공제계약의 부활

제55조 추가분담금 등의 납입

제56조 준용규정

제5편 승무원공제 보상내용

제57조 보상책임(승무원공제)

제58조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제59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공제의 구성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조합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5.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1} 또는 장비^{(*)2}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3}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1}하거나 장비^{(*)2}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1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2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6.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8.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의무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공제를 말합니다.
10.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1. 자동차 취급업자 :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
12. 조합원 : 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조합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가. 기명조합원 :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조합원이 지정하여 공제계약청약서에 기명조합원란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을 말합니다. 만약, 기명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를 기명조합원으로 봅니다.
 - 나. 친족조합원 : 기명조합원과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조합원 :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조합원 : 기명조합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조합원의 사용자에게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조합원 : 다른 조합원(기명조합원, 친족조합원, 승낙조합원, 사용조합원을 말함)을 위하여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 중인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공제계약자동차 :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4.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조합원의 부모 : 조합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조합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조합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5.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예: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6.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7. 공제가액 : 공제계약 체결 당시 또는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제2조 자동차공제의 구성

①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판매하는 자동차공제는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 「자기차량공제(전기택시에 한함)」, 승무원공제의 5가지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공제에 가입합니다.

1. 의무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는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공제 : 의무공제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의무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공제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 「대인공제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공제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공제」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자기차량공제」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전기택시에 한함)
승무원공제	자동차사고로 승무원이 죽거나 다친 경우와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지원 (대전지부에 한함)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 1 장 배상책임

제 1 절 대인공제 I

제3조 보상하는 손해

「대인공제 I」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 조합원

「대인공제 I」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공제 I」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1. 기명조합원
2. 친족조합원
3. 승낙조합원
4. 사용조합원
5. 운전조합원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공제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조합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조합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공제Ⅱ 와 대물공제

제6조 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공제Ⅱ」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공제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공제」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 조합원

「대인공제Ⅱ」와 「대물공제」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조합원
2. 친족조합원
3. 승낙조합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조합원
5. 운전조합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공제Ⅱ」와 「대물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조합원 이외의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조합원이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7. 조합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조합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공제」 공제가입금액 한도에서는 보상합니다.
8.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공제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공제계약자동차가 조합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조합원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조합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공제계약자동차에 신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조합은 제9조(조합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조합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9조 조합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조합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정하는 공제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0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 ①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에서 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공제 I」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공제 II」, 「대물공제」 :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

지 급 공 제 금	=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 ^(*1) 에 따라 조합 원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 용	-	공 제 액
-----------------------	---	---	---	--------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1)에 따라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공제Ⅱ」: 「대인공제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공제계약자동차가 「대인공제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공제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공제」: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 부담금

① 조합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조합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조합이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 또는 「대물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 :
 - 1 사고당 「대인공제Ⅰ·Ⅱ」는 300만원, 「대물공제」는 100만원
2.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 1 사고당 「대인공제Ⅰ」은 300만원, 「대물공제」는 100만원

② 조합원은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조합은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조합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차량공제

제12조 보상하는 손해

「자기차량공제」에서 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 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1. 타 차 또는 타 물체^(*1)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2)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공제계약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이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2)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공제계약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제13조 조합원

「자기차량공제」에서 조합원은 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기명조합원을 말합니다.

제1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생긴 손해
5.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8. 공제계약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9.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0.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 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송 또는 신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2. 공제계약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공제계약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2}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기명조합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공제계약자동차를 빌린 임차인^{(*)3}
 - 다. 기명조합원과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조합원 및 기명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2)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가 공제계약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함합니다.

제15조 지급공제금의 계산

「자기차량공제」의 지급공제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지 급 공 제 금	=	공제계약자동차 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	---	---------------------	---	--------	---	-----------------------

2. 위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공제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제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공제계약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공제계약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라. 공제계약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조합이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 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위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계약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 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다. 그 밖에 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4. 위 '자기부담금'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조합이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공제계약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전부손해'라 함은 공제계약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조합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공제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5. 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공제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조합이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일 경우 또는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공제계약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공제」의 공제계약은 사고발생시에 종료합니다.
7. 조합이 공제계약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공제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공제계약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공제계약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가 조합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 1장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

제16조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 「대물공제」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차량공제」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 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공제금을 청구하였으나, 공제계약자동차가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계약자동차의 반환여부는 조합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17조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 ① 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조합이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에 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 (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

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④ 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⑥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에서 조합은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8조 제출 서류

조합원은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공제」	「대물 공제」	「자기 차량 공제」
1. 공제금 청구서	○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진단서 등)	○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 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 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공제Ⅱ」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7.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공제Ⅱ」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
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 증명서		○	○
9. 그 밖에 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조합은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

제19조 가지급금의 지급

- ① 조합원이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조합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공제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조합은 이 약관상 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조합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공제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조합원이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8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20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조합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은 조합원이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청구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조합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⑦ 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2조 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공제 I·II」	「대물공제」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정비 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23조 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

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② 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③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④ 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을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⑤ 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2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24조 공제금의 분담

「대인공제 I·II」, 「대물공제」, 「자기차량공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금을 분담합니다.

1.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공제계약 포함)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이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 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공제금을 각 조합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리운전업자(대리운전자를 포함)가 가입한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서 공제금이 지급 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5조 조합의 대위

① 조합이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조합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조합은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자기차량손해」의 경우 공제계약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

를 취득합니다.

1.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2.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를 낸 경우

③ 조합원은 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조합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① 조합은 이 공제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② 조합이 공제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조합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7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조합은 조합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조합원을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② 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控除)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액이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8조 공탁금의 대출

조합이 제27조(합의 등의 협조·대행)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조합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조합원은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29조 공제계약의 성립

- ① 이 공제계약은 조합원이 청약을 하고 조합이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조합원이 청약을 할 때 '제1회 분담금(분담금을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분담금 전액(분담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분담금 등'이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조합이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계약청약서를 조합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제1회 분담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공제계약이 성립하면 조합은 제33조(공제기간)의 규정에 따라 공제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제1회 분담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30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조합은 조합원이 청약을 한 경우 조합원에게 약관 및 조합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조합원이 동의하는 경우 약관이나 조합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광기록 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 제외합니다.
 1. 조합원이 청약을 했을 때 조합이 조합원에게 약관 및 조합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2. 조합원이 청약을 했을 때 조합이 청약 시 조합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조합은 이미 받은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돌려 드리며, 분담금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1조 공제안내자료의 효력

조합이 공제계약과정에서 제작·사용한 공제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공제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2조 청약 철회

- ① 조합원은 자동차공제분담금 영수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조합이 조합원에게 자동차공제분담금 영수증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조합이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의무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계약
 3.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
- ④ 조합은 조합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조합원이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

습니다.

⑥ 조합이 제4항의 분담금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33조 공제기간

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공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 제 기 간
1. 원 칙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공제(책임보험을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공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공제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2. 예 외 : 자동차공제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 및 의무공제	분담금을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기간 이전에 분담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공제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 합니다.

(*) '자동차공제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조합원으로 하는 자동차공제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공제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이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4조 사고발생지역

조합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조합원이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조합원 등의 의무

제3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조합원은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조합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공제계약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공제계약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조합원의 주소, 성명, 연령 등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조합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차액분담금을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44조(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은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44조(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공제계약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공제계약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의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② 조합원은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조합원이 이를 알리지 않으면 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사고발생 시 의무

① 조합원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조합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5. 공제계약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조합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금에서 공제(控除)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38조 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① 조합원은 의무공제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계약청약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조합원. 다만, 조합원이 이 공제계약의 권리·의무를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9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2. 공제계약금액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분담금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계약 체결 후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이 공제계약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39조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①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조합에 통지하여 조합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공제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의한 조합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공제계약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④ 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분담금적용요율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 공제계약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조합원에게 남은 분담금을 돌려드리거나, 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후의 조합원에게 차액분담금을 청구합니다.

⑤ 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공제계약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공제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40조 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①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 공제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조합에 통지하여 조합이 승인한 때부터 이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한 공제계약의 효력은 조합이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② 조합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여부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③ 공제계약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공제계약이 승계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조합에 알려 계약사항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조합이 제1항, 제3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분담금적용요율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 조합원에게 남은 분담금을 돌려 드리거나 차액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공제계약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조합이 제1항, 제3항의 승인을 거절할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 > 일할계산의 사례

$$\text{기납입분담금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366})}$$

제41조 공제계약의 취소

조합이 조합원의 사기에 의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조합은 공제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제43조 조합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계약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서 정한 자동차(의무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공제계약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39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0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공제계약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0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제계약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0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이 공제계약과 공제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② 이 공제계약이 의무공제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공제계약을 맺기 전에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공제기간이 개시되는 의무공제가 포함된 새로운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 ① 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공제계약을 맺은 때에 조합이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조합원이 공제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조합이 이를 승인 하였을 때
 - 다. 조합이 공제계약을 맺은 날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라.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항이 조합이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2.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조합이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조합이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39조(공제계약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0조(공제계약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차액분담금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이 그 분담금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조합이 제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 나.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제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공제금의 청구에 관하여 조합원, 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의무공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은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1호 또는 2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조합은 보상합니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다른 보험(공제를 포함)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45조 분담금의 환급 등

- ①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분담금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분담금과 변경 후 분담금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조합의 고의·과실로 분담금이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조합원이 적정 분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조합은 이를 안 날 또는 조합원이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조합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분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조합은 공제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1. 조합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0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3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분담금
2.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뺀 잔액
3.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조합이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분담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에서 '조합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조합원이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공제의 해지는 제외)
2. 조합이 제41조(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제44조(조합의 공제계약 해지)에 따라 공제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분담금 미납으로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⑤ 공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윤후

1. 조합원이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휴지하여 이 공제에 계약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이하 '윤후기간'이라 합니다)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일을 뺀 나머지 윤후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분담금을 돌려 드립니다.
2. 윤후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 또는 휴지신고가 승인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 또는 휴지 종료 시 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관계관청에 휴업 또는 휴지종료신고가 있기 전에 조합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3. 윤후기간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은 관계관청에 휴업 또는 휴지신고를

승인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기간의 개시일자와 공제계약자동차의 명세를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 또는 휴지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운휴기간 중에 발생한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운휴기간 중에 공제계약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조합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공제계약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⑦ 이 약관에 의해 조합이 조원원이 낸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⑧ 조합이 제7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 4 장 그 밖의 사항

제46조 약관의 해석

-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조합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7조 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 ① 조합은 제18조(제출 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37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공제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은 공제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공제)회사 및 보험(공제)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조합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공제계약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공제종목, 보장종목, 공제계약금액, 자기부담금 및 분담금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계약 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48조 공제계약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조합은 공제계약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49조 보험사기 행위 금지

조합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 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0조 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과 조합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1조 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조합의 본부, 지부 또는 사업소 소재지 중 조합원이 선택하는 대한민국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2조 분담금의 분할 납입

①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는 공제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분담금의 분할 납입을 요청하여 조합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분할 납입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분담금'이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할분담금을 납부할 때에는 조합원은 이 공제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분담금을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공제분담금을 현금과 은행어음으로 납입한 경우, 어음은 현금기간이 끝나는 전일까지 결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금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53조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①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부터 14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조합은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공제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조합은 조합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조합원이 이 약관 3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3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37조(사고발생 시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를 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54조 공제계약의 부활

① 제53조(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에 의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조합원이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분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이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조합은 공제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해당 분할분담금을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5조 추가분담금 등의 납입

공제규정 제27조(결손금의 처리) 제30조(자부담금)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분담금 등의 납입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납입기일 안에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56조 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제5편 승무원공제 보상내용

제57조 보상책임(승무원공제)

① 승무원 부상시 보상내용

1.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공제계약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승무원(운전자)이 죽거나 다친 때에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 합니다.
2. 공제조합이 승무원 공제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사망공제금

승무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3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부상공제금

승무원이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진단서가 수개인 경우 가장 긴 진단을 기준)

- (1) 4주 이상 6주 미만 : 1,000,000원
- (2) 6주 이상 10주 미만 : 3,000,000원
- (3) 10주 이상 20주 미만 : 7,000,000원
- (4) 20주 이상 : 10,000,000원

3. 공제조합이 사망공제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부상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망공제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내용

1. (공제금의 지급)

가. 공제조합은 계약기간 중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승무원이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 합니다)으로 승무원에게 지급합니다.

-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주(피해자 1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나. '가'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 승무원과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 (2) 공제조합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승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다. '가'항 및 '나'항의 피해자에서 승무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명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피해자 사망의 경우 : 5,000,000원
- 피해자 중상해의 경우 : 5,000,000원
- 피해자 부상의 경우 : 진단주수 기준으로(진단서가 수개인 경우 가장 긴 진단을 기준)
 - 10주 이상의 경우 1,500,000원
 - 8주 이상 10주 미만의 경우 1,000,000원
 - 4주 이상 8주 미만의 경우 500,000원

바. ‘가’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 ‘가’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아.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마’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자. ‘가’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승무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차. ‘나’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승무원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 (4)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6)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공제금의 비례분담)

가. ‘1’항(공제금의 지급) ‘가’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나'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나.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제조합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 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text{형사합의금} \times \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div \text{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58조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승무원 공제

- 가. 승무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손해
- 나. 승무원이 범죄를 목적으로 공제계약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싸움, 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손해
- 다. 승무원이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손해
- 라. 승무원이 마약 또는 약물 등 (용어정의③)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공제계약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손해
- 마. 공제계약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상해를 입은 손해
- 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 사.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에 기인한 손해
- 아. 핵연료 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제59조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① 승무원 부상시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

1. 승무원은 다음의 경우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 사망공제금의 경우에는 승무원이 사망한 때

나. 부상공제금의 경우에는 승무원의 진단서가 발급된 때

2. 유의사항

가. 승무원이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공제금 청구서와 진단서, 그 밖에 조합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② 승무원 이외의 자의 공제금 청구

1. 승무원의 사망, 구속, 형집행 등으로 공제금의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들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순위로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승무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③ 만기환급금의 지급

해당지부 승무원공제 총 수입분담금에서 총 지급공제금(미지급공제금 포함)과 공제조합에서 정한 관리비를 차감한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만기시까지 계약을 유지한 승무원공제 계약자에게 공제계약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④ 해지환급금의 지급

조합원(승무원)이 공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납입한 분담금에서 지급공제금 및 공제조합이 정한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에 이자(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를 더하여 반환하여 드립니다.

⑤ 별도 규정 제정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공제조합이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